

구리시 공고 제2024-748호

2024년 구리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공고

경기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연계하여,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공동 및 단독주택에 대하여 구리시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 구리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구 리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 보조금 지원

나. 사업기간 : 공고일 ~ '24. 12. 6.(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다. 사업비 : 67,308천원(도비 33,654, 시비 33,654)

라. 지원규모 : 총 122가구

구분	규모	용량	지원방식
일반	122	1000W 이하	설치 단가의 80% 정을 지원 (도비 40 + 시비 40 + 자부담 20)
사회적 약자	10	1000W 이하	전액 지원 (도비 50 + 시비 50)

※ 신청용량 상황에 따라 지원 가구 및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마. 지원대상

구 분	자 격 요 건
일 반	- 「건축법 시행령」제3조5의(별표1)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사회적 약자	- 저소득층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 가구 ※ 사회적 약자 지원자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후 접수

바. 가구별 지원금 및 자부담금(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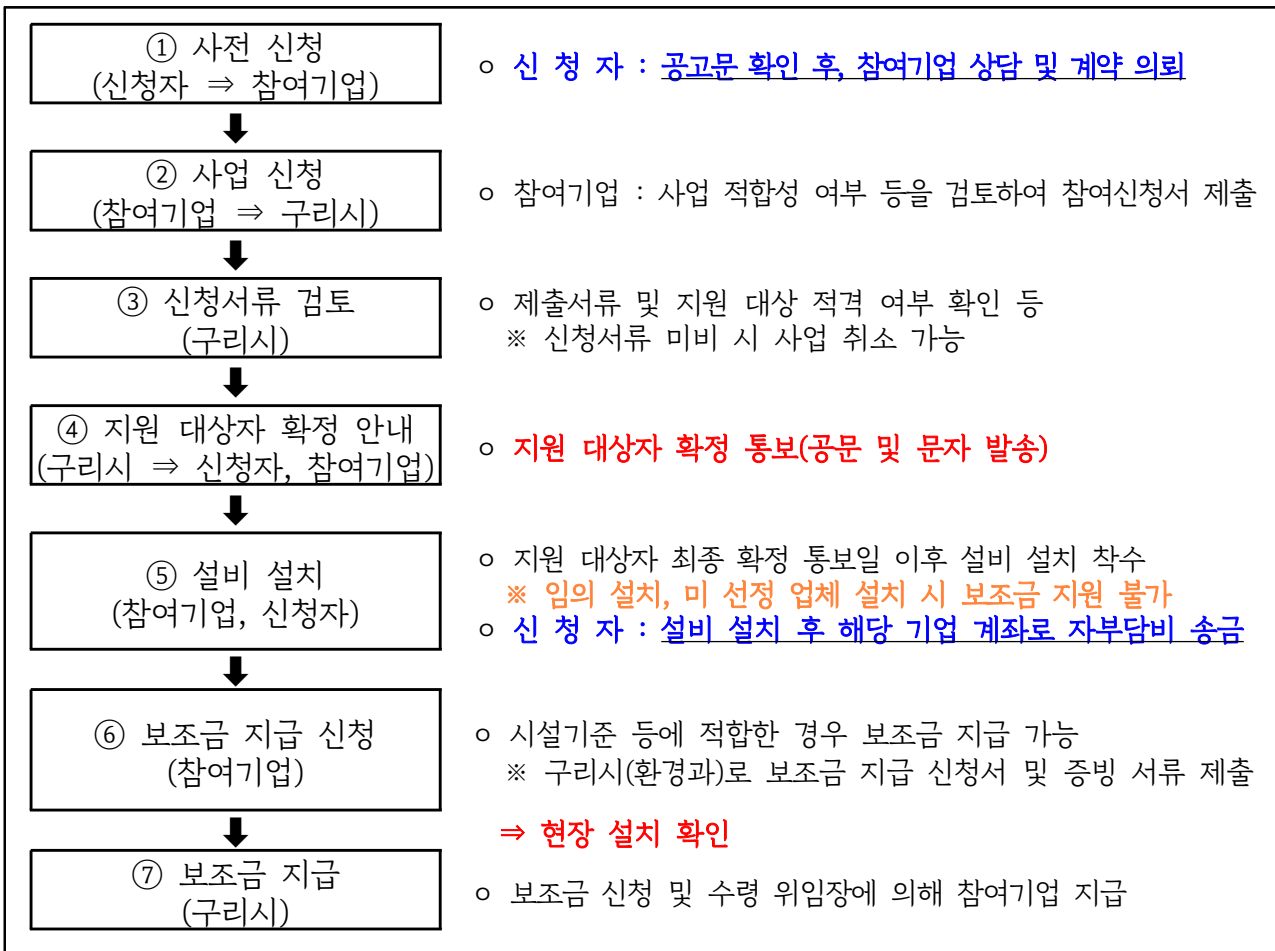
(단위 : 원)

구 분	설치용량	제품가격	지원금액	자부담금액	비고
공동·단독주택	400W	850,000	680,000	170,000	사회적 약자 전액 지원

※ 참여기업별 자세한 제품 가격 및 자부담 금액 등은 별도 첨부 자료 참고

2. 세부 추진계획

가. 지원절차



나. 신청접수

- 1) 신청기간 : 공고일 ~ '24. 12. 6.(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2) 신청방법 : 신청자는 직접 공급제품의 보급가격, 용량, 업체 소재지 등을 참고하여 참여업체로 접수
 - ☞ 신청자는 설비 설치 및 작동 이상 확인 후, 해당 기업 계좌로 자부담비 송금
- 3) 접수문의 : 구리시 환경과 기후대응팀(☎031-550-2325)
-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별지 제 1, 1-1 ~ 5호 서식)
 - ※ 신청서 원본은 설치 계약 시 시공업체에 제출
 - ※ 예산 배정액 한도 내에서 구리시청 환경과에 선착순 접수한 순서에 의거 선정함
 - ※ 참여업체가 일괄 접수할 경우 자체적으로 접수 순번을 정하여 신청
- 5) 참고사항 : 설비 철거 시 환수 기준 필독

《!!설비 철거 시 환수기준!!》

- 보조금 환수 기준 : 의무사용기간(5년) 이내 설비 철거시 보조금 환수 조치
- 설치 확인일로부터 사용기간에 따라 환수율이 적용됨
 - 사용기간 : 1개월 미만 - 보급업체, 1개월 이상 - 참여자

기 간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환수율 (%)	업체 부담	90	80	70	60	50	40

- 신청자로부터 보조금 반환하되 철거비용은 신청자와 보급업체가 협의하여 부담
- **시·군 승인 없이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할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반환 조치**
-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보급사업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보급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반환 조치
- 단, 소유자의 거주지 이전시 양도 및 이전설치 불가할 경우에는 미반환하며 미니태양광 철거 신청서(별지 제 4, 4-1,2호) 구리시 제출
- 소유자의 거주지 이전으로 태양광 설비 양도·양수 시, 소유주 변경신고서(별지 제 5호) 구리시 제출

다.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1) 신청기간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시 지정한 기간까지
- 2) 신청접수 : 온라인 전자우편(메일) 접수 ※ 메일 접수 후 원본 제출

· 메일주소 : qjatn123@korea.kr

· 우편주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별관 3층 환경과

- 3) 참여업체가 대행하여 보조금 신청(수령 위임장에 의해 참여기업 지급)

※ 제출서류

- 1) 지원대상자 참여신청서 원본(방문 및 우편)
- 2)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별지 제 3, 3-1 ~ 6호)
- 3) 하자이행보증서(품질보증서)

3. 유의사항(준수사항)

-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제1항[별표 1]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을 적용하고 「전기공사업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으로 1가구 이상 신청가능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 (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
- **신청자가 설비의 성능 및 적정용량, 경제성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검토·결정 후 참여기업과 계약하며, 경기도 및 구리시는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 참여업체는 설치완료 후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이행**하여야 함
- 미니태양광 설비설치가 완료된 후 사업기간 내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함
- 보조금은 배정 예산액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해 지급하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경기도 및 구리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참여기업과 신청자는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

- 의무사용 기간 이후에 이전 설치 또는 철거할 경우에는 구리시에 보고해야 함
- 지원성과 분석을 위해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자의 전력사용량 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 하며, 성과분석 자료는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경기도 및 구리시는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문제발생 등으로 설치계약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직권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없음
- 미니태양광 이전설치 및 철거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 세대에 설치된 계량기가 단방향일 경우 태양광발전으로 생긴 잉여전류의 방향을 감지하지 못해 사용량으로 검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방향 계량기로 교체 설치를 권장함**(단방향 계량기로 문제가 생길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미니태양광설비는 신청자 소유로 설비를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및 하자발생 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세입자의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대계약 만료 후 설비의 소유권, 시설물 훼손 등으로 인한 양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경기도 및 구리시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음
- 본 공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함

4. 기타사항

-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참여기업으로 문의
-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시청 환경과 기후대응팀(031-550-2325)으로 문의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서식]

□ 목 차

[별지 제 1호 서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신청자용)	6
[별지 제 1-1호 서식]	공동주택 동의서	7
[별지 제 1-2호 서식]	소유자 동의서	8
[별지 제 1-3호 서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정보 제공 동의서 . . .	9
[별지 제 1-4호 서식]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 .	10
[별지 제 1-5호 서식]	미니태양광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11
[별지 제 2호 서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참여기업용)	12
[별지 제 3호 서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13
[별지 제 3-1호 서식]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14
[별지 제 3-2호 서식]	준공사진	15
[별지 제 3-3호 서식]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설치완료 확인서 . .	16
[별지 제 3-4호 서식]	미니태양광설비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7
[별지 제 3-5호 서식]	위임장	19
[별지 제 3-6호 서식]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20
[별지 제 4호 서식]	미니태양광 철거 신청서	21
[별지 제 4-1호 서식]	양수 포기서	22
[별지 제 4-2호 서식]	부동의서	23
[별지 제 5호 서식]	미니태양광 소유주 변경 신고서	24
[참고 1]	미니태양광 설비 명판 서식	25
[참고 2]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26

공동주택 동의서

- 공동주택명 : 연락처 :
 신청인 : 연락처 :
 세부주소 : (동 / 호수)
 참여기업명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2항의 5호』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의 4호』에
근거하여 상기 신청인의 「2024년 구리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 및 설치에 동의합니다.

2024. . .

(공동주택명) 관리소장 (인)

소유자 동의서

- 소 유 자 : 연 락 처 :
 설 치 주 소 : (동 / 호수)
 참 여 기 업 명 :

‘2024년 구리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에 따라 해당 소유 주택에 미니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동의합니다.

2024. . .

소 유 자 : (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구리시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17조를 준수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 사업명 : 2024년 구리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개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방보조금 사업신청 시~보조금집행 완료 시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없을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개인) :

신 청 인 : (인)

구리시장 귀하

[별지 제 3-1호 서식]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계 약 당사자	신청인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E-MAIL					
	시공 업체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E-MAIL					
계 약 내 용	분 야	미니태양광		설비타입			설치용량	W	
	설치장소				도 지원금	일금	원		
	설치기간	2024년 월 일 ~ 2024년 월 일			시·군지원금	일금	원		
	사업비 총액	일금		원					
	계약금	일금		원		신청인자부담	일금	원	
본 문 조 항	<p>제1조 (계약금)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부담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2조 (신청인 분담비용) ①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의 설치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② “참여기업”은 “신청인”에게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며,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한다.</p> <p>제3조 (계약의 해약) ① “신청인”과 “참여기업”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② “신청인”과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40px;">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p> <p style="padding-left: 40px;">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③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참여기업”은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 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p> <p>제4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인”,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p>								
특 약 조 항	<p>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 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 “참여기업”은 설치종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진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② “신청인”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의 무상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p> <p>제2조 (사용자 교육) “참여기업”은 “신청인”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p> <p>제3조 (지체상금율) “참여기업”이 “신청인”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p> <p>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경기도 및 구리시의 사업 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p>								
2024년 월 일									
(신청자명)					(인)				
(참여기업)					(인)				

[별지 제 3-2호 서식]

준 공 사 진

○ 설치장소 :

구 분	설치 전	설치 후
근 경 (내 부)		※ 명판
	※ 촬영일자 :	※ 촬영일자 :
원 경 (외 부)		
	※ 촬영일자 :	※ 촬영일자 :

※ 내부 사진은 명판부착 후 촬영 / 외부 사진은 동·호수가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별지 제 3-3호 서식]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설치완료 확인서	
구리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참여자(신청인, 참여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확인 후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 본 사업은 미니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인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설치하는 사업임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1.2. 신청인과 참여기업은 본 지원사업의 주체이며, 설치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5년 무상보증)등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고, 설치 후 양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구리시는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1.3. 설비의 설치와 관련한 일조권, 조망권, 안정성 등 설치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구리시는 개입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1.4. 참여기업은 신청인이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신청인은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1.5. 신청인과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1.6. 신청인은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양도·이전·폐기할 경우 구리시 승인을 받아야 함	<input type="checkbox"/>
1.7. 신청인은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의무사용기간(5년)이 부여되며, 설비를 양도·이전·폐기할 경우 해당 구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설치자는 해당 구리시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 반환하여야함 ※ 무단 폐기 적발 시 기간에 상관없이 보조금 100% 환수	<input type="checkbox"/>
2) 설비를 이전하는 경우 설치자는 해당 구리시에게 신고하여야함	<input type="checkbox"/>
3) 폐기,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설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input type="checkbox"/>
1.8. 미니태양광 설치 신청자는 아래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미니태양광 발전설비의 현장 점검표에 의거 설치를 확인함.	<input type="checkbox"/>
2) 정상 가동됨을 확인하고, 교육 및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input type="checkbox"/>
보조금 지원 가구에 대해서는 설치 전·후 전력사용량은 향후 사업 계획 수립 및 분석자료 등으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참여기업	(인)

2	전기 배선	모듈 배선	○모듈 후면	○육안 확인	○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정(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 이상(내구성) 재질의 타이) ○군별, 극성별로 별도 표시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3	인버터	사양	○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명판의 모델, 정격용량,	○신청사양과 동일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설치상태	○설치장소	○절연검사	○설치장소의 적정성, 절연상태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인버터 설치용량 및 입력전압	○인버터 및 모듈	○인버터 입력 및 모듈출력 확인	○모듈 설치용량이 인버터 설치용량의 105%이내 ○모듈 개방전압(후면명판)은 인버터 입력전압(인증서, 시험성적서)의 범위 이내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표시사항	○인버터 또는 별도 표시창	○육안 확인	○모듈 및 인버터의 출력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Peak, 누적발전량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4	모듈 거치대	설치상태	○설치장소	○육안 확인	○난간부와 2개소 이상 견고하게 결속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재질	○난간부 및 거치대	○육안 확인	○내부식성 자재 사용(스테인레스, 용융아연도금 등) ○체결용 볼트, 너트 등의 제 규격품 사용	
5	통합 명판	표시항목	○관리감안	○육안 확인	○용량 및 제작사 등 기기별 표시사항 부착(AS연락처등)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6	운전교육	운전매뉴얼	○점검현장	○신청자와의 면담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여부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제외

현장확인일 : 20 . . .

설치가구주 : (서명날인)

참여업체명 :

현장 확인자 : (서명날인)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구리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으며, 구리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리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시장의 지방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4 . . .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인

(도장날인)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참여기업

(도장날인)

양수 포기서

- | | |
|-----------------------------------|---|
|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명 | <input type="checkbox"/> 연락처 |
| <input type="checkbox"/> 양수자(세입자) | <input type="checkbox"/> 연락처 |
| <input type="checkbox"/> 세 부 주 소 | (동 / 호수) |
| <input type="checkbox"/> 관 리 번 호 | |
| <input type="checkbox"/> 포 기 사 유 | <input type="checkbox"/> 미관문제 <input type="checkbox"/> 소음문제 <input type="checkbox"/> 조망권 방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상기와 같이 미니태양광의 양수를 포기합니다.

2024. .

양수자(세입자)

(인)

부 동 의 서

- 공동주택명 : 연락처 :
 신 청 인 : 연락처 :
 세 부 주 소 : (동 / 호수)
 참여기업명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2항의 5호』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의 4호』에 근거하여 상기 신청인의 「2024년 경기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 및 설치에 부동의합니다.

2024. . .

(공동주택명) 관리소장 (인)


[참고 1]

[미니(베란다형) 태양광설비 명판 서식]

[명판]

설비명	미니태양광 발전설비(W)		
용량	모듈 : ○ W x ○ EA, 인버터 ○ W x ○ EA		
관리번호			
준공년월			
하자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하자보증기간 종료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		
설치 전문기업	기업명 :		
	대표전화 :		
	홈페이지 :		
	시공 및 A/S 책임자	성명 :	
		직통전화 :	
		휴대폰 :	

※ 본 설비는 구리시 에너지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보조금이 지급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리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환경과
(031-550-2325)

- 규격 : 가로 12cm × 세로 16cm
- 재질 : 바닥판-아크릴
(투명아크릴 합체)
- 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 부착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지정된 장소에 전문기업이 자체 제작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1. 시공기준

1. 시공기준

가. 공통기준

- 1) 미니태양광 발전설비의 주요자재(모듈, 인버터, 모니터링 장치, 모듈 거치대)는 의무적으로 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태양전지판

- 1) 태양광 모듈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KS 인증 제품 포함)된 제품만을 사용한다.
- 2) 모듈의 설치장소에는 수목, 건물 등으로 인한 음영이 없어야 한다.
(현장 확인 점검표상에 방위각 정확히 기재 요망)

다. 모듈 거치대

- 1) 태양광 모듈을 난간에 거치 시 2개소 이상 견고히 결속하여야 하고, 거치대는 내풍압 시험 성능검사 적합제품 사용한다.
- 2) 옥상형의 경우 앵커볼트 및 구조물은 용융아연도금 동등 이상의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하며 구조안전진단결과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 3) 거치대 설치 후 시설물의 추락방지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설치한다.
- 4) 모듈거치대는 스테인레스, 또는 용융아연도금 등 내부식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5) 거치대를 설치하는 장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노후화된 건물이나 설치장소의 균열 등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의 발견 시 지지력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전기배선 및 접속함

- 1) 외부 노출 배선은 합선 등의 전기적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수처리 및 몰딩 처리한다.
- 2) 안전이 확보되는 장소에 전용콘센트를 설치하여 연결한다.(전용 콘센트가 아닌 경우 안전이 확보되어야 함)

마. 인버터

- 1)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KS 인증 제품 포함)된 제품만을 사용한다.
- 2) 절연이 확보된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고, 전기적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바. 기 타

- 1) 참여기업 선정 시 모듈 및 인버터는 원칙적으로 다른 제품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부득이 한 경우 사전에 경기도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2) 신청인에게 운전교육 및 매뉴얼을 제공하고, 설치확인 현장점검표에 따라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하여 제출한다.
- 3) 시공업체는 설비소유주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시공업체는 설치완료 후 하자이행증권(5년) 또는 5년간 무상하자보증이행을 약속하는 하자이행각서나 보증서(5년)를 소비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을 경기도와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시공기준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시공기준 등) 중 태양광 설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